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언론 홍보 및 취재지원)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2-126호(2022.12.29.)로 공고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별지 2호 서식에 대한 오류가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무조정실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1개 직위, 총 1명)

채용분야	인원	직급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언론 홍보 및 취재지원	1명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임용일 (23.2월중)로 부터 1년간	공보실 소통총괄비서관실 (서울특별시)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주요 직무내용

- 해외순방 전담, 기자단 간담회 등 대·내외 행보 취재지원 총괄
- 기자단 지원·관리 등 긴밀한 대외협력을 통한 언론계 네트워크 강화
- 언론주요이슈 및 최신 홍보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지원 등 언론지원 품질 향상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62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4. 응시자격 요건 (기준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①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② 응시자격요건 **[별지 1호] 직무기술서(응시자격요건) 참조**

구분	내용
필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경력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학위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용어 정의 >

- 관련분야 경력 : 언론사, 민간기업, 공공분야의 언론 및 정책홍보 등 관련 업무
- 관련분야 학위 : 신문방송, 언론정보, 방송영상, 광고, 홍보, 커뮤니케이션, 정치·외교 등 이와 유사한 학과

○ 기본사항

-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경력 또는 학위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하며,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학위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등은 **최종 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 력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 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
 - *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연월일)·상근여부(주당 근무시간)·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누락되는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학 위

-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③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제외 / 연차별 차등 우대)
2. 정부·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수상실적 (기관장급 이상 상훈,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일 경우에만 인정 (단체 제외) / 건수별 차등 우대)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경력

- 응시자격요건으로 지정된 관련 경력을 충족한 이후 초과한 관련 경력만 우대요건으로 인정(공무원경력, 민간경력 통산)

5.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규정상 연봉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업무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연봉한계액(일반임기제 6호) : 37,152~73,739천원
(기타 수당 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6. 시험방법

①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아래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로 결정 가능
- ※ 서류심사 기준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표창·상훈·수상실적 등

②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7.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2.12.29.(목)~'23.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원서접수	'23.1.4.(수)~'23.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우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1.19.(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면접심사	'23.1.26.(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3.2.6.(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http://www.opm.go.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2.12.29(목) ~ '23.1.9.(월), 09:00 ~ 18:00
 -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을 고려하여 방문접수 지양**
 -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봉투 겉면에 "응시분야 및 직급" 기재
 -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국무조정실 인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인사과 채용담당자
 - (우편번호) 30107
- 응시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배부

9. 제출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 : 필수 제출 >

-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 정부수입인지(행정주사(일반임기제) : 7,000원) 첨부,
 - ※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
- ②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 ※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됨을 유의
-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 ※ A4 2매 내외로 작성(형식·구성은 자유)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 ※ A4 5매 내외, '요약서'는 A4 1매로 작성
-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 개별사항 : 해당자만 제출 >

-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별지 8호 서식>
 - ※ **재직기간(연월일),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등 반드시 기재
 - 비상근 근무시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예: 주당 30시간)
 - **담당업무 미기재시 관련분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
 -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②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 학위·연구논문은 A4 1매 이내의 별도 논문요약서 첨부 <별지 9호 서식>
- ※ 논문의 표지·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 심사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공개되지 않음

③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 외국인 제출 불필요)

10.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할 경우 반환청구서(별지서식 10호)를 작성하여 이메일 (opminsa@korea.kr)로 제출하시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본을 남기고 원본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3.2.7.(화)~'23.2.9.(목)

- 응시인원이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합격자의 경우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내역,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경력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동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담당자 : 044-200-2801)